

해외주식 소수단위 매매거래 설정약관 신규조문대비표 (2023.10.12 개정)

현행	개정	비고
<p><b>제14조(관할법원)</b>                     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『민사소송법』이 정한 바에 따른다.</p>	<p><b>제14조(관할법원)</b></p> <p>① -----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정하는-----.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경우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를,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손 관할로 하며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『민사소송법』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	<p>자구 수정 및 『금융소비자 보호법 및 시행령』 개정에 따라 조항 추가</p>